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6

제출년월일 : 2001.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 (안 제7조).
- 공유재산심의범위 확대
  · 필요할 경우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확정 심의
- 공유재산 심의 생략 규모 조문 정리
  ·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사용료, 임대요율의 탄력적 적용(안 제23조)
- 일 반 재산평가액의 5% → 5% 이상
- 공공용 재산평가액의 2.5% → 2.5%이상
- 경작용 재산평가액의 1% → 1% 이상 등으로 정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안 제23조).
-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 이전시 대부요율 인하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전세권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2).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4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군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재산"을 각각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0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중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하고, 동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공용,공공용"을 "공용·공공용"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대부의"를 삭제하며, "1000분의 50" 다음에 "이상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대부의"를 삭제하며, "100분의1"을

"1000분의1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교재산의"로 하며,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교육감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의 본문중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으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중"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 "토지의 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하며,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고, 단서부분중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요재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영제84조제2항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으로 한다.	**제5조**(중요재산) ---------- ---------- --영---------- ---------- ---------- ---.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한다)제88조에 의거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은닉된 소관의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생 략) ② ~ ③(생 략)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 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 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⑥(생 략)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 ---------- ---------- ---------- ----------. 1. ~ 2.(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⑥(현행과 같음)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③(생 략)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 7.28〉	**제7조**(공유재산심의회)①~③(현행과같음)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⑥제4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0. 7.28>	⑥제4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나.군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교육용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행정재산·보존재산(교육용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 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할시이상 지역 : 3백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시지역 : 6백제곱미터이하 토지 3. 군지역 : 9백제곱미터이하 토지 4. 시가 3백만원이하의 기타재산	③ 〈삭 제〉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 략)	②행정재산·보존재산----------사용·수익허가----------.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 허가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 6.(생 략) 7.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1. ~ 6.(현행과 같음) 7. 사용·수익허가---------- 8. 사용·수익허가 ----------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사용·수익허가부----------.
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생 략)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 5. ~ 6.(생 략)	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 1. ~ 3.(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 6.(현행과 같음)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생 략) 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신설 2000.7.28> ② ~ ③(생 략)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1. ~ 3.(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② ~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또는 사용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1000분의 25이상--------. ②----------1000분의 10이상----.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1.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 한다.	1. ----------(삭제)----------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1	2.------(삭제)---------- ------- 1000분의 10이상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④---------- ---------- ------1000분의 40이상------.
1. ~ 2.(생 략)	1. ~ 2.(현행과 같음)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⑥---------- ---------- ------1000분의 25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000분의 10이상 ---.
⑦ ~⑨(생 략)	⑦ ~⑨(현행과 같음)
⑩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요율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⑩폐교재산의---------- ---------- ---------- ----------.
〈신 설〉	⑪교육감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생 략)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현행과 같음)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제 6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③ 〈삭 제〉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3.(생 략)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 1. ~ 3.(현행과 같음)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0.7.28> 1. ~ 6.(생 략)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 1. ~ 6.(현행과 같음)
〈신 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현 행	개 정 안
	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 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 2.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삭 제〉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②(생략) ③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36조(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②(현행과 같음) ③---------- ---------- ---------다음 --------.
1. ~ 2.(생 략)	1. ~ 2.(현행과 같음)
3.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	3.-----토지면적---------- ---------- ---------- ---------- ----------

현 행	개 정 안
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바닥건물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 ----------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 --- ---------- ---------- ---------- ---------- ---------- ---------- ----------분할매각----.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재정법

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16>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등의 궤도차량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재산을 말하며, 제1항제4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0.20>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95.5.16, 2000.10.20>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④ 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5.5.16>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1.6, 94.9.29, 98.7.16, 99.4.30, 2000.10.20>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삭제 <94.9.29>
6.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삭제 <2000.10.20>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1.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15.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90.11.6,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격결정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의 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0.11.6, 93.9.23, 94.12.23 대령 14447, 96.6.29, 98.7.16, 99.4.30, 2000.10.20>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

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삭제 <99.4.30>

제92조의2 (대부료 등의 감면)

①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4.30>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②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9.4.30> [본조신설 98.7.16]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90.11.6, 2000.10.20>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②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0.8.8, 90.11.6, 93.9.23, 94.9.29, 98.7.16, 99.4.30, 2000.7.1, 2000.10.20>

25.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98.7.16, 99.4.30, 2000.10.20>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의3 (잡종재산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0.10.20>

제100조의5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 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제105조 (변상금)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6, 94.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 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 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② 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② 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5>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99.4.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4, 98.2.20, 2000.3.28>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개정 2001.1.5>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01.1.5>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시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290-1229 / 전송(043)292-1525
의사과 과장 이상기 의사담당 김왕년 담당자 임재혁

문서번호 의사 81433 - 190
시행일자 2001. 6. 23.
(공개여부) 공 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1. 6. 22.	결재 공람		
	번호	2697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6. 23.)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29-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12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9-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129-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29-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붙임 : 의안 각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1-51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0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902,507,426,740원, 세출결산액은 783,863,336,37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9,794,056,6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82,664,750원, 국고보조금잔액은 67,369,000원으로서 총 118,644,090,3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지 출 건 수 : 1건 ○ 지출결정액 : 28,469,000원 ○ 지 출 액 : 28,468,890원 ○ 잔 액 : 110원 ○ 지 출 사 항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28,468,890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	○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 실시 (안 제3조)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험,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 입법예고의 예외(안 제4조) ○ 입법예고문 작성 및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9조) ○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 (안 제7조) - 공유재산심의범위 확대 · 필요할 경우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확정 심의 - 공유재산 심의 생략 규모 조문 정리 ·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임대요율의 탄력적 적용(안 제23조) - 일 반 재산평가액의 5% → 5%이상 - 공공용 재산평가액의 2.5% → 2.5%이상 - 경작용 재산평가액의 1% → 1%이상 등으로 정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 (안 제23조) -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 이전시 대부요율 인하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전세권 조항 신설(안 제25조의 2)